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

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님,

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도 포함되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의 의정활동시에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구체적으로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시킴으로써, 예비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준비 기간을 갖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시민신뢰를 위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갖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